



제41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스포츠포토
미환급금 등의 사용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358호)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359호)

2024.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III .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요지	4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4. 1. 24.
3. 회 부 일: 2024. 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진흥과 사행산업 등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이하 “미환급금등”이라 함)은 동 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되어 국민체육 진흥 등에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체육 진흥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허용된 사행산업의 한 유형이므로, 해당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금등은 스포츠도박과 같은 불법사행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진흥과 사행산업 등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이하 “미환급금등”이라 함)은 동 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되어 국민체육 진흥 등에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체육 진흥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허용된 사행산업의 한 유형이므로, 해당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금등은 스포츠도박과 같은 불법사행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육진흥투표권 미환급금, 미환불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시켜, 체육 분야 불법사행 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9701호)	
제27조(환급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u>국민체육진흥계정</u> 에 귀속된다.	제27조(환급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u> -----.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 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u>국민체육진흥계정</u> 에 귀속된다.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u>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9482호)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

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생략)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u><후단 신설></u> ③ (생략)	5.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에 귀속되는 금액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 ----- -----. ----. <u>이 경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재원은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표(票)로서, 현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는 1년간 적중에 따른 환급금을 요구할 권리(환급금 요구권)가 생기며,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됨. 마찬가지로 스포츠토토를 구매하였으나 그 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않거나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스포츠토토는 무효가 되며, 구매자는 1년 이내에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반환청구권)가 생기며,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됨.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환급금(이하 “미환급금”)과 반환청구금(이하 “미환불금”)은 모두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귀속되는데,¹⁾ 2023년 기준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 규모는 151억원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표] 스포츠토토 미환급금(미환불금 포함) 규모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미환급금	10,600	10,200	12,600	14,900	15,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아닌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에 귀속시켜 해당 재원을 체육 분야

1)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영하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성됨.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 100조원을 돌파하였고,²⁾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포토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재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될 것임.

[표] 불법사행산업 유형별 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2015	2019	2022
온라인도박	196,180	241,611	375,059
사설 스포츠 도박	202,774	205,106	211,145
불법 하우스 도박	36,725	36,655	87,526
불법 사행성 게임장	131,814	149,806	154,927
경주게임	127,831	103,508	117,178
사설 카지노	13,610	74,956	45,478
불법 소싸움	-	3,832	4,216
불법 복권	-	-	30,633
불법 동물 대상 게임	-	-	1,075
합 계	708,934	815,474	1,027,236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다른 사행산업 업종과 마찬가지로, 스포츠포토도 이미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한 ‘중독예방치유부담금’³⁾을

2)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2년)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37.5조원, 사설 스포츠 도박 21.1조원 등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총 102.7조원으로 추산됨.

부담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미환급금 등까지 부담금 성격으로 전환할 경우 이중적 부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임.⁴⁾

[표] 사업자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강원랜드 (카지노)		931	1,831	3,426
한국마사회 (경마)		612	589	4,201
국민 체육 진흥 공단	경륜	147	132	777
	경정	40	89	364
	투표권	4,525	6,708	6,137
창원레포츠파크 (경륜)		46	45	108
부산시설공단 (경륜)		13	45	105
복권위원회 (복권)		6,867	7,790	8,717
청도공영사업공사 (소싸움)		2	13	20
합 계		13,183	17,243	23,85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적으로 복권, 경륜·경정, 경마 등의 미환급금등은 각각 복권기금, 국제기금 등으로 귀속되어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경우 스포츠토토의 미환급금 등은 해당 산업 육성이 아닌 중독예방치유부담금과 같이 불법 산업 근절과 같은 제한적인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또한, 이미 ‘국민체육진흥계정’ 하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계정 운영·관리 주체)의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센터’, ‘체육진흥투표권 신고포상금’ 등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계정 변경없이 해당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사업 실적현황

(단위: 건 수, 백만원, 명)

구 분		2021	2022	2023
상담건수		1,555	959	910
홍보행위 차단		5,223	8,814	9,092
포상금 지급	지급건수	83	112	115
	지급금액	403	413	586
불법사이트 관련자 검거	검거건수	83	112	115
	검거인원	149	148	152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따라서, 개정안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치유 자원 확대의 필요성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입장, 기존 계정의 예산사업 확대를 통한 입법취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5